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보도자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980호 배포일시 : 2011.10.29(토)

문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FTA무역규범과장 최진원(☎:2100-8135)

제 목 :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경향신문 기사 (10.29) 관련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제하 10.29(토) 경향신문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

(기사내용)

-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을 경우 미국 대기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FTA위반을 주장 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10.27, 지식 경제부 발표)가 한·미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동 조치는 ①우선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 통합(SI) 기업) 참여 제한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②향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공공 정보화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공공 정보화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는 대기업 참여 제한 범위에 관계없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우리가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 해당되어 GPA협정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한·미 FTA에도 위반되지 않음.

- 더구나, 향후 개정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동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는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외국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 없이도 처음부터 한·미 FTA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기사내용)

- "국내 대기업 시스템통합 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는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내 대기업이 미국인 투자자의 손을 빌려 정부의 방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실관계)

- 한·미 FTA는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과 보상, 이행요건 등)를 투자 유치국이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1.16조).
-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은 정부조달챕터와 관련된 것으로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미국 투자자는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